

2)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(* 입학연도에 대한 해석은 본 지침 75쪽 「입학연도에 대한 해석」을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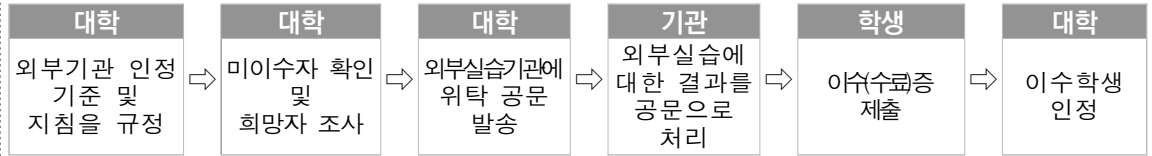
입학 년도	전공 구분	이수학점		성적기준	교직적성 및 인성검사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	성인교육	면허(자격)증	산업체현장실습		
		전공과목	교직과목								
2009 ~ 2012 학년도	주 전 공	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 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 ■ 특수학교 80학점 - 전공과목 42학점 -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*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*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		■ 22학점 이상 -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- 교직소양 4학점 이상 - 교육실습 4학점 이상	■ 졸업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	■ 1회 이상 (13.3.1이후 졸업자)	■ 2회 이상 ※ 단, '16.3.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 까지 2 학기 가 남은 자는 1회, 2학 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	■ 2회 이상 ※ 단, '21.2.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	■ 보건교사 - 간호사 면허증 ■ 영양교사 - 영양사 면허증	■ 4주 (중등 공업에 관련 표시과목)	
		■ 30학점 이상(표시과목 관련) -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- 교과교육 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 ※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 이상) 포함		-					-	-	
	부 전 공	교육 대학 원	■ 38학점 이상(표시과목 관련) - 교과내용 30학점 이상 *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		-				-	-	-
			교육 청	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					■ 4학점 이상 - 교육학개론(2학점) - 실기교육방법론(2학점)	-	-
2013 ~ 2015 학년도	주 전 공	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 ■ 특수학교 80학점 - 전공과목 42학점 -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		■ 22학점 이상 -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- 교직소양 6학점 이상 - 교육실습 4학점 이상	■ 전공과목 - 평균 75점 이상 ■ 교직과목 - 평균 80점 이상	■ 2회 이상 ※ 단, '16.3.1 기 준 교원양성 과정 이수 시 까지 2학기 가 남은 자는 1 회, 2학기 미 만 남은 자는 제외	■ 2회 이상 ※ 단, '21.2.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	■ 보건교사 - 간호사 면허증 ■ 영양교사 - 영양사 면허증	■ 4주 (중등 공업에 관련 표시과목)		
		부 전 공	교육 대학 원	〈교육대학원〉 ■ 30학점 이상 -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- 교과교육 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 ※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 이상) 포함				-	-	-	-
	교육 청			〈교육청〉 ■ 38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				-	-	-	-
		실기	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		■ 4학점 이상 - 교육학개론(2학점) - 실기교육방법론(2학점)			■ 전공과목 - 평균 75점 이상 ■ 교직과목 - 평균 80점 이상	■ 2년 이하의 양성 과정: 1회 이상 ■ 2년 초과인 양성 과정: 2회 이상	-	■ 국가기술자격증 (관련 표시과목에 한함)

입학 년도	전공 구분	이수학점		성적기준	교직적성 및 인성검사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	성인지교육	면허(자격)증	산업체현장실습
		전공과목	교직과목						
2016 학년도 ~ 2020 학년도	주 전 공	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 ■ 특수학교 80학점 - 전공과목 42학점 -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*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*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	■ 22학점 이상 -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- 교직소양 6학점 이상 - 교육실습 4학점 이상	■ 전공과목 - 평균 75점 이상 ■ 교직과목 - 평균 80점 이상	■ 2회 이상	■ 2회 이상	■ 2회 이상 ※ 단 '21.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	■ 보건교사 - 간호사 면허증 ■ 영양교사 - 영양사 면허증	■ 4주 (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)
	교육 대학원	■ 30학점 이상 -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- 교과교육 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 ※ 기본이수과목 14학점(5과목 이상) 포함		■ 전공과목 - 평균 75점 이상					
	교육청	■ 38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							
	실기	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	■ 4학점 이상 - 교육학개론(2학점) - 실기교육방법론(2학점)	■ 전공과목 - 평균 75점 이상 ■ 교직과목 - 평균 80점 이상				■ 국가기술자격증 (관련 표시과목에 한함)	
2021 학년도 이후	주 전 공	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 ■ 특수학교 80학점 - 전공과목 42학점 -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*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*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 ※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(기본 교육과정 교과(군)*) 7학점(3과목) 이상 포함 ※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동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* 교육부 고시 제2015-81호 총론 및 [별책 3]의 교과(군)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요개설(가능한 전 교과군)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	■ 22학점 이상 -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- 교직소양 6학점 이상 - 교육실습 4학점 이상	■ 전공과목 - 평균 75점 이상 ■ 교직과목 - 평균 80점 이상	■ 2회 이상	■ 2회 이상	■ 4회 이상 (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)	■ 보건교사 - 간호사 면허증 ■ 영양교사 - 영양사 면허증	■ 4주 (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)
	교육 대학원	■ 30학점 이상 -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- 교과교육 영역 6학점(2과목) 이상		■ 전공과목 - 평균 75점 이상					
	교육청								
	실기	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	■ 4학점 이상 - 교육학개론(2학점) - 실기교육방법론(2학점)	■ 전공과목 - 평균 75점 이상 ■ 교직과목 - 평균 80점 이상	■ 2년 이하의 양성 과정: 1회 이상 ■ 2년 초과인 양성 과정: 2회 이상			■ 국가기술자격증 (관련 표시과목에 한함)	

※ (결격사유 확인) ' 21.6.23.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필수

이수자를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.

<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처리 절차 예시>



※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)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,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. 단,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, 2018학년도 이후 실시·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.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결재 문서 등(시행 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 가능

※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의 경우, 교원자격검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방법에 관한 간접 실습 등 대체방안을 대학의 장이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.

-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 한 후에는 이수(수료)자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※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이수한 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확인서 등) 해야 함

3) 성인지 교육 ※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
- ①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

㉠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등)을 이수한 사람: 2회 이상

㉡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, 일반대 교육과 등)을 이수한 사람: 4회 이상

※ '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'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

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(2021. 2. 9.) :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 이상”은 “2회 이상”으로 본다.

-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㉠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강, 연수,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.

㉡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, 특정학기 또는 특정학년에 집중 운영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. 다만,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횡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.

㉢ 대학별 성인지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,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 내용, 방식, 기간, 이수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㉣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,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. 다만, ‘성인지 교육의 주요 내용’은 다음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하도록 한다.

※ ‘성인지 교육 1회’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.

▪ **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(예시)**

-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- ②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-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-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
㉞ 여성가족부의 성폭력, 성매매 예방교육(‘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’에 의한 교육)을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하나,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,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.

③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(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)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※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확인서 등) 해야 함.

④ 편입학,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
※ 예시: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,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,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.

⑤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점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)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,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할 수 있다.

※ 단,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,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 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 가능

4)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※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

① '21.6.23. 이후* 자격검정 대상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확인한다.

*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검정일 기준으로 적용

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(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)

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㉡ '21.6.23.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

㉢ 교원자격증 기존 미발급자 발급 신청 및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는 미해당

② 대학은 검정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, 다음 사항*을 참고해 학칙 등에 결격사유 확인 내용을 반영한다.

㉡ **(성범죄이력 관련)** 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소재지역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’할 수 있으며, 세부 절차는 대학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(미발급자의 발급 신청의 경우는 신청자가 경찰서, 범죄이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직접 첨부)